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9. 11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9월 3일

나. 발 의 자 : 김화영 의원 외 9명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9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13년 9월 10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김화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입법·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입법·법률 고문의 직무를 규정함
- 2)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함
- 3) 입법·법률 고문은 변호사, 법률학교수 및 입법분야의 경험자중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위촉함
- 4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음
- 5) 입법·법률 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 절차를 규정함
- 6) 입법·법률 고문의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의 지급기준을 규정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기영)

- 이 조례 제정안은 의회에 입법·법률 자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3조에 입법·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,
 -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법·법률 고문은 변호사, 법률학교수 및 입법분야의 경험자중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전이라도 사임의사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입법·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협의를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입법·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및 회의비, 소송 수임료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의회의 입법·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에 “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 고 명시하고 있으며,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자치구 의회의 조례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4개 의회에서 입법고문 제도를 운영중인 실정으로 우리 의회도 조례로 제도화 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.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안 (김화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3년 8월 일
발 의 자 : 김화영의원 외 9명

1. 제안이유

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입법·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·법률 고문의 직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함(안 제3조)
- 다. 입법·법률 고문은 변호사, 법률학교수 및 입법분야의 경험자중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위촉함(안 제4조)
- 라.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음 (안 제5조)
- 마. 입법·법률 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입법·법률 고문의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의 지급기준을 규정함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자치법규안 : 별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입법·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입법·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
 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
 3.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
 4. 의정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
 5. 그 밖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수입 받은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
- ② 입법·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입법·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 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,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

- ② 입법·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·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
-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·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받은 후 위촉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한

다.

제5조(해촉) 의장은 입법·법률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4. 입법·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5.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
제6조(임기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의장은 입법·법률 사안과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고문료 등) ① 입법·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고문료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·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

1.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
2.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

제9조(소송 수임료 등) 입법·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승낙서

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
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·법률 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위 축 장

귀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 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인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